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2. 18(목) 평창군수(안전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16. 04. 14(목)
- 상정일자 : 2016. 04. 27(수) 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도로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오정희)

- 본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무단점용 정의 규정 수정과 상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평창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제3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를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